

2018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공공데이터정책과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TEL: 044-205-2282
<http://www.mois.go.kr>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TEL: 053-230-1114
<http://www.ni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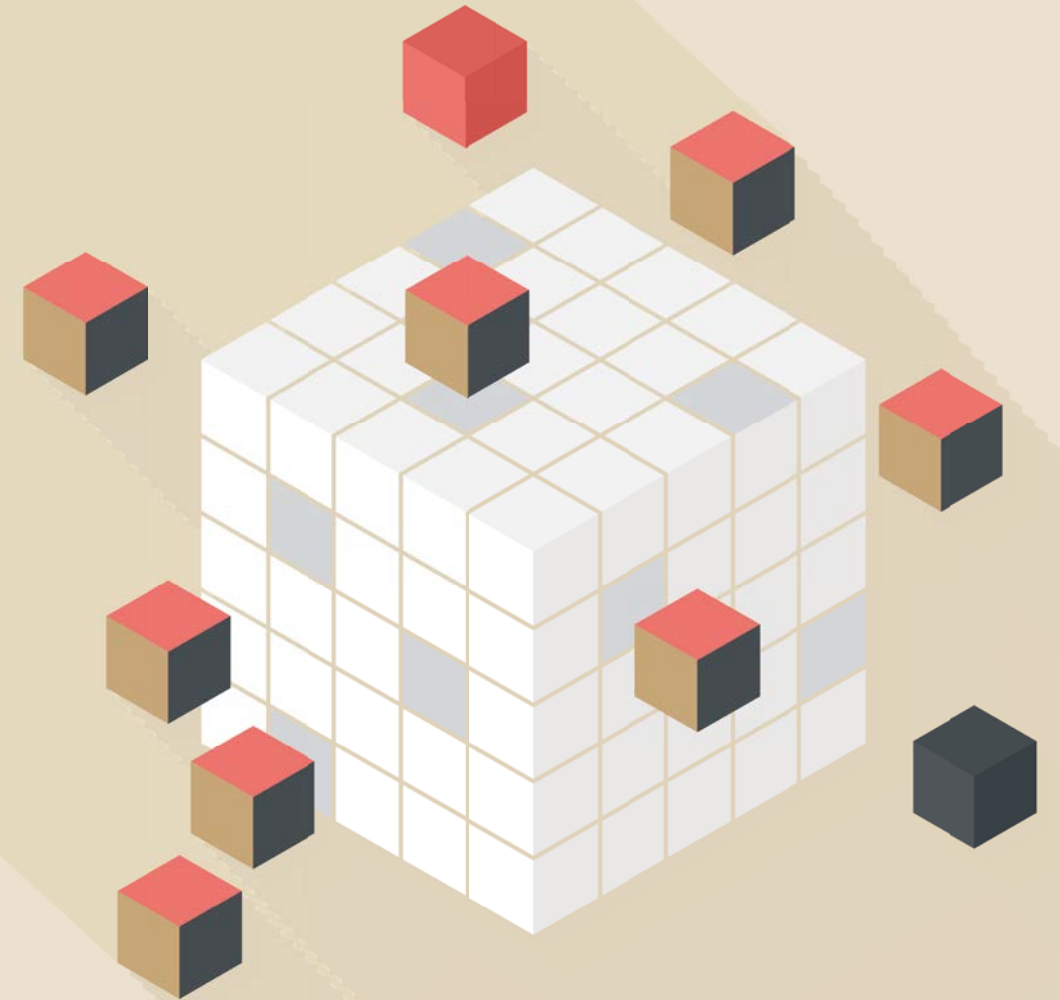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TEL: 02-6191-2064
<http://www.odmc.or.kr>



2018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2018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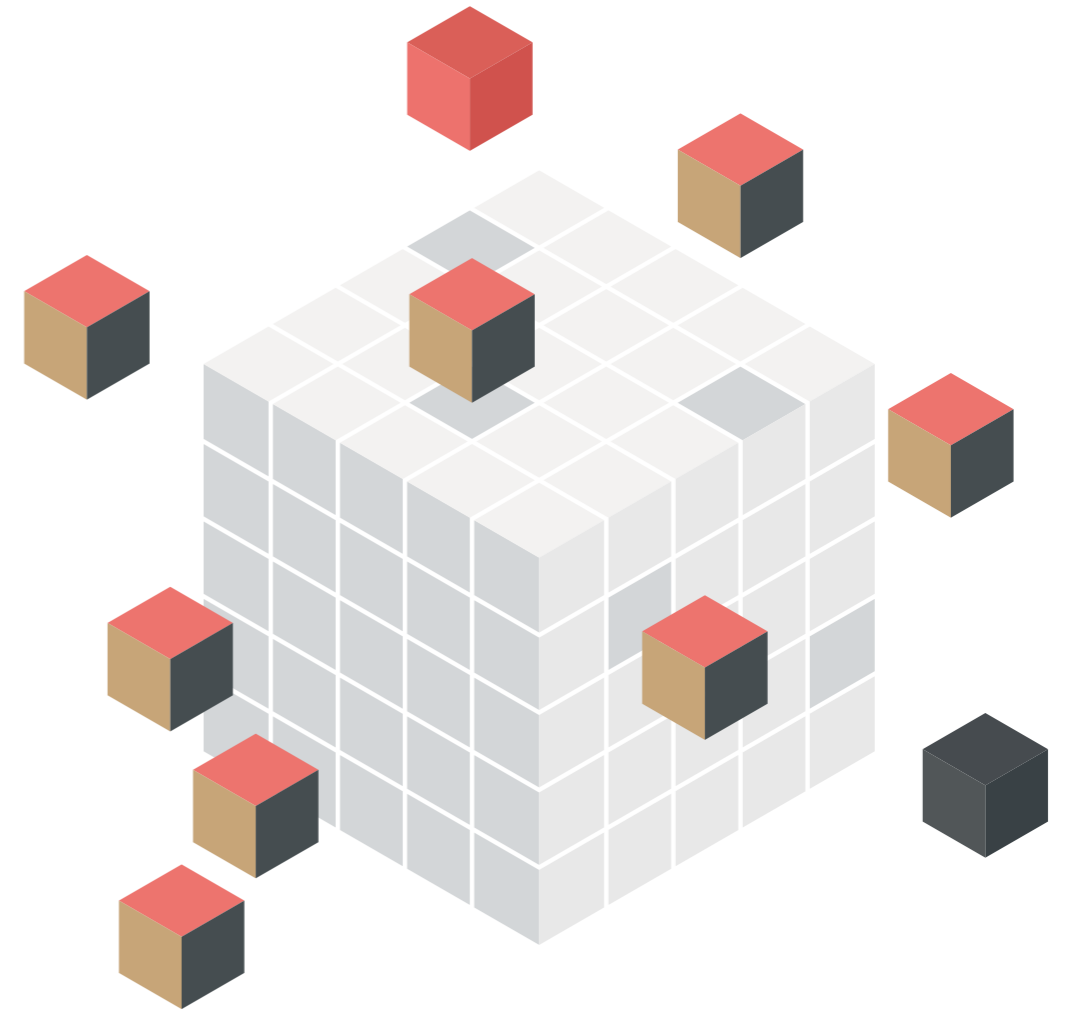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CONTENTS

I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제도 소개

1.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제도	07
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07
3. 분쟁조정 절차	08
4. 분쟁조정 현황	10
5. 분쟁조정 관련 상담·컨설팅 현황	16

II 분쟁조정사례

1.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19
1)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분쟁조정	19
<개인정보>	19
(1) 소방청, 화재발생지 데이터	19
(2)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본정보 Open API 데이터	24
(3)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및 제원 데이터	29
(4) 대검찰청, 범죄분석 데이터	33
(5)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지급 데이터	38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	39
(6) 고용노동부,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39
(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데이터	42
(8)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현황 데이터	46
(9)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현황 데이터	49
(10) 금융감독원, 공매도잔고 데이터	51
(11) 충북 보은군, 토석채취허가현황 데이터	57
<기타>	58
(12) 국립춘천박물관, 문화유물 3D 데이터	58
2) 제3자 권리 관련 분쟁조정	61
(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데이터	61
(2) 국토교통부, 발간물(도시개발관련 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원문 파일	63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논문색인 데이터	64
(4) 독립기념관, 국가수호사적지 데이터	65
3) 기타 분쟁조정	66
(1) 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데이터	66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단지 데이터	66
(3) 경기도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데이터	67
2. 분쟁조정 취하 사건	68
(1)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주차장 평면도 데이터 등	68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의료기관 데이터	68

III 공공데이터, 분쟁위에 물어보세요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70
1)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요?	70
2)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71
3) 공공데이터에 대외 공개가 곤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72
4)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판단 하나요?	73
5)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74
6) 외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에게 제공의무가 있나요?	74
7)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정한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신청 받았습니. 신청인의 요구대로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요?	74
8)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76
9) 공공기관 발간물에 대해 제3자에게 출판하도록 허락해주었는데, 이후 다른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나요?	77
2.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78
1)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78
2)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	78
3)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79
4)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악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79
5) 공공데이터 이용 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나요?	80
3. 분쟁조정 관련	82
1)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82
2) 공공기관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당 기관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83
3) '분쟁조정'이라고 하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가 많은가요?	83
4)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83
5)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83
4. 기타	84
1) 이용자가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제3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기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84
2) 공공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 하나요?	85
3)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데이터에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입력한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공대상에 해당 하나요?	86
4)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은 다른 제도인가요?	87

발간사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이 중심이 되는 초연결 지능화사회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런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지능화사회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을 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전방위적 구축,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지원,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등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서 활용 확대방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국민은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중단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출범하였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5년간 12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 결론을 도출하고, 부동산 가격정보, 사업자정보, 자동차정보, 학술정보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와 공공데이터 이용자를 위해서는 729건의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 및 제공 방안 등에 대해 조언하면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18년 한 해 동안의 분쟁조정 및 상담 내용을 모아서 「2018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조정 사례는 주요 쟁점별로 사건 내용 및 위원회의 조정 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고, 상담 사례는 빈번한 질문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공공기관 담당자는 물론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 데이터를 보다 잘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 해 완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제도 소개



1.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제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함)」 제2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 25명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 처리 이 외에도 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공공데이터법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분쟁조정 절차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제공을 거부 하거나, 제공 중이던 데이터를 제공 중단하였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신청 접수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제공중단을 받은 국민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 (www.odmc.or.kr)에 접수함으로써 분쟁조정 신청

② 신청사실 통보

·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사실 통보

③ 사실조사

· 자료 수집을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사실조사 완료 이후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사건 회부

④ 사전조정

· (조정 전 합의권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의 권고,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 종결
· (분쟁조정 목적달성 등) 사실조사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신청인이 제공거부 사유를 양해하는 경우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 종결

⑤ 조정부 회의 개최

· 조정 전 합의가 결렬되거나 다수의 위원이 출석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의 경우 조정부 회의 개최
· 신청인·피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조정부에서 양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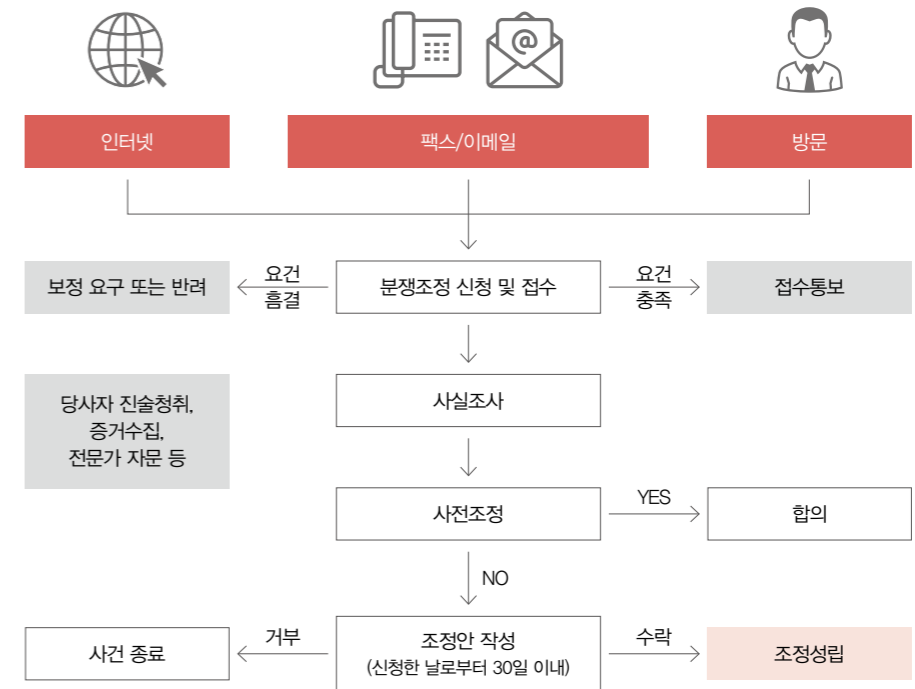
⑥ 조정의 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조정 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거부로 간주

⑦ 효력의 발생

· 양 당사자의 조정결정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절차



4. 분쟁조정 현황

1) 처리 현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126건임. 이 중에서 반려결정 16건, 거부결정 5건, 신청취하 16건을 제외하고, 실제 조정처리된 것은 86건임. 이 중 조정성립은 71건으로 사전조정 37건, 조정안 수락은 34건이며, 조정 불성립은 15건임

반려결정 16건은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을 상대로 데이터 제공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와 신청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음

거부결정 5건은 사실조사결과 신청대상이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임

조정신청 취하 16건은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임

용어해설

- 반려**: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경우
- 거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취하**: 신청인이 분쟁조정절차 진행도중 조정신청을 취소한 경우

연도별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현황

2018.12.31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반려결정	3	0	5	1	7	16	
거부결정	3	1	1	0	0	5	
신청취하	1	4	7	1	3	16	
조정성립	사전조정	1	7	5	16	8	37
	조정안 수락	9	7	3	10	5	34
조정 불성립	조정안 불수락	0	3	5	3	4	15
기타	-	-	-	-	3(진행)	3	
계	17건	22건	26건	31건	30건	126건	

실제 조정 처리는 86건으로 이 중 데이터 제공을 권고한 경우가 57건, 66.3%이며, 공공기관의 제공거부 또는 중단처분이 타당함을 확인한 경우가 29건으로 33.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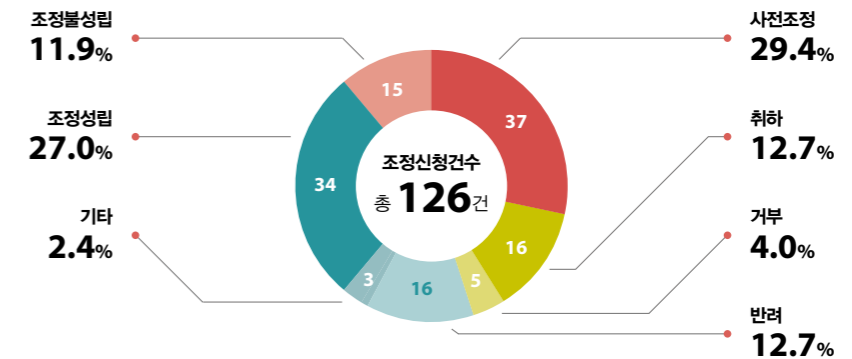
조정성립은 총 71건으로 실제 조정처리된 86건 중 82.6%에 해당함. 이 중 사전조정은 37건, 조정안 수락은 34건이며, 이 중 사전조정은 조정안 작성 전에 위원회의 합의권고 또는 당사자간 자발적 합의를 통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경우를 의미함. 최초 신청한 데이터 대비 조정된 제공 범위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처분(제공거부/중단)의 경위를 양해하여 더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조정안 불수락은 15건으로 17.4%에 해당하며, 10건, 66.7%는 공공기관(대법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의 조정안 불수락으로, 5건, 33.3%는 신청인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됨. 조정 불성립된 경우의 쟁점은 타 법상 비공개 대상(통계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2건,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 4건, 데이터 미보유(Open API 등) 4건, 개인정보 4건, 저작권 1건임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7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이 여전히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 타 법상 비밀정보 등의 해석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정보 가공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함. 위와 같은 법률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정안 이행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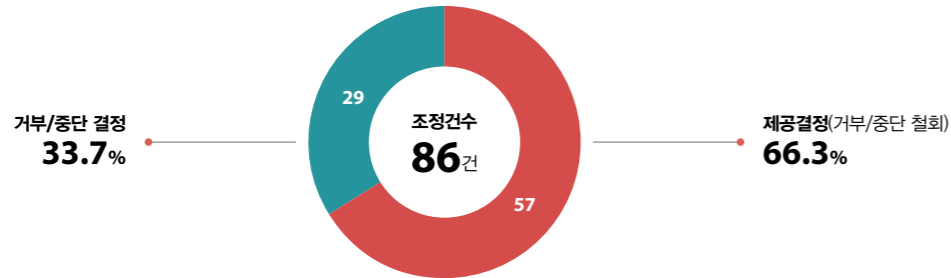
분쟁조정 현황

2014.01.01~2018.12.31 조정완료 기준



조정안 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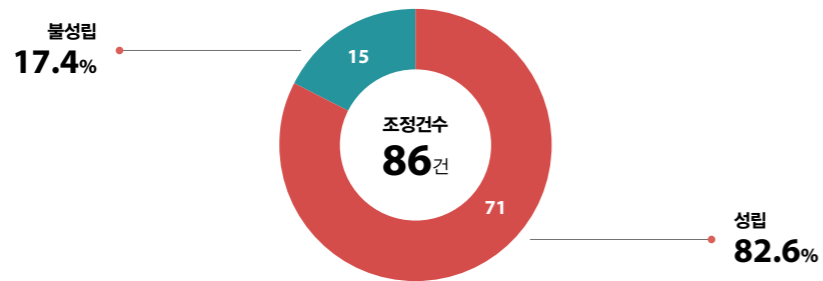
2014.01.01~2018.12.31 조정완료 기준



전체 조정완료건수(건) 중 거부, 반려, 취하, 기타를 제외한 실 조정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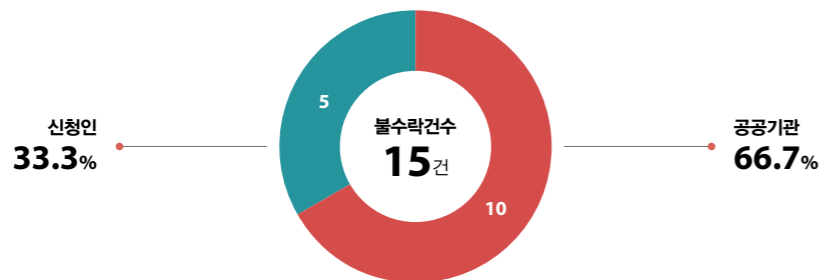
조정 성립 현황

2014.01.01~2018.12.31 조정완료 기준



조정 불성립 현황

2014.01.01~2018.12.31 조정완료 기준



2) 분쟁조정 데이터 유형별·내용별 현황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사건을 데이터 유형별로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DB)가 91건, 72.2%로 가장 많고, 저작물은 23건, 18.3%, Open API는 12건, 9.5%로 나타남

발간물 데이터 18건을 제외한 나머지 108건에 대해 데이터 내용별로 분류하면, 사업자정보가 24건, 2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가격정보 11건으로 10.2%, 통계정보, 자동차정보, 학술정보가 각 8건, 각 7.4%를 차지함. 의약/의료정보 6건, 5.6%, 가격정보, 교통정보, 사건사고정보, 건축정보 등이 각 5건으로 각 4.6%를 차지함. 기타는 19건, 17.6%로, 학교정보, 건강보험가입자·사회복지정보, 노동조합정보, 3D데이터, 봉사참여정보 등이 있음. 사업자정보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한 신청인이 자동차정비업체정보와 관련하여 여러 지자체와 주무부처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중복을 제거하면 부동산가격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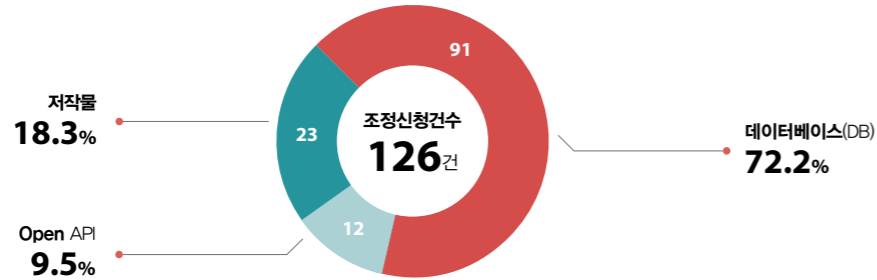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데이터 내용별 현황

2018.12.31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사업자정보	0	2	1	17	4	24
부동산가격정보	2	4	3	2	0	11
통계정보	0	2	2	2	2	8
자동차정보	1	1	1	2	3	8
가격정보	3	0	1	1	0	5
교통정보	1	0	3	0	1	5
사건사고정보	0	2	2	0	1	5
시험문제	0	3	0	1	0	4
학술정보	2	0	1	0	5	8
의약/의료정보	1	0	2	0	3	6
건축정보	0	0	0	0	5	5
기타	3	1	5	5	5	19
발간물	4	7	5	1	1	18
계	17건	22건	26건	31건	30건	12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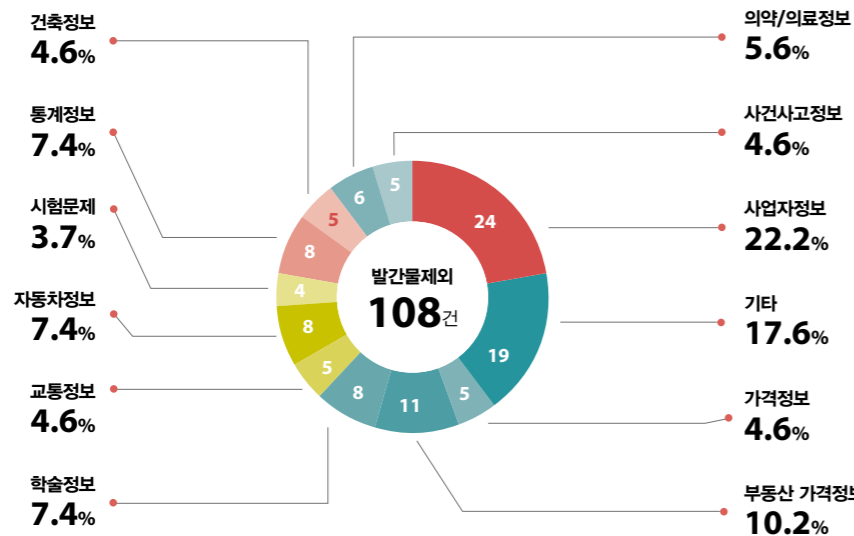
데이터 유형별 분쟁조정 비율

2014.01.01~2018.12.31 기준



데이터 내용별 분쟁조정 비율

2014.01.01~2018.12.31 기준



3) 분쟁조정에 있어서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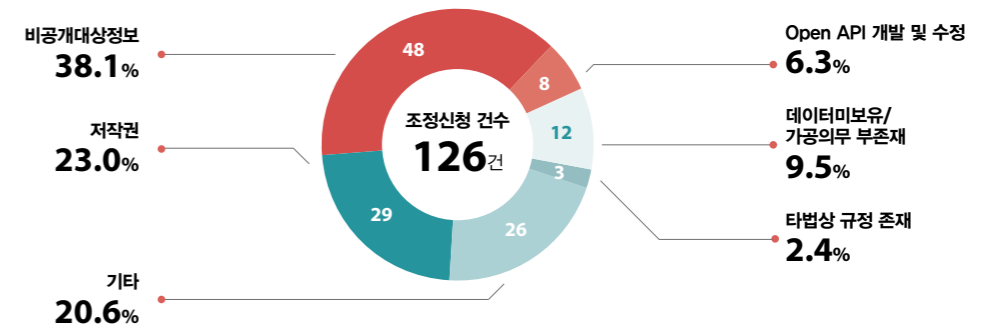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주요 쟁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하함)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여부 48건, 3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제3자의 저작권 포함 여부가 29건, 23.0%이며, 데이터 미보유/가공의무 부존재가 12건, 9.5%를 차지함. 이 밖에 Open API 개발 및 수정이 8건, 6.3%, 타 법상 규정존재가 3건, 2.4%, 기타는 26건, 20.6%로 나타남

비공개대상정보 중에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 여부가 17건, 3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개인정보 여부 16건, 33.3%, 타 법상 비밀 정보 여부 9건, 18.8%로 나타남

타 법상 비밀규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통계법 등에서 과세정보, 사건사고정보 등 수요가 많은 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출금지 정보로 명시하고 있어 공공데이터 개방에 제약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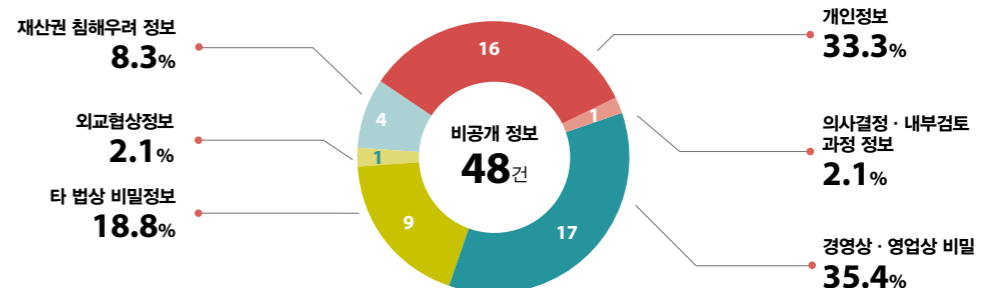
분쟁조정 쟁점 현황

2014.01.01~2018.12.31 기준



분쟁조정 비공개정보 쟁점 현황

2014.01.01~2018.12.31 기준



5. 분쟁조정 관련 상담·컨설팅 현황

상담·컨설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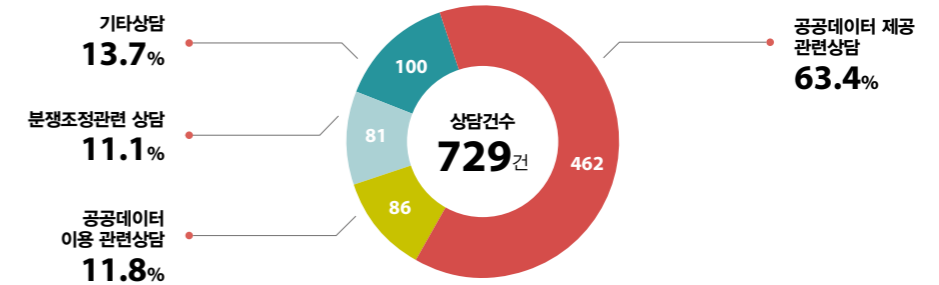
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29건의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함. 데이터 유형은 데이터베이스가 424건으로 58.2%, 저작물이 187건으로 25.7%이며, 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등 제공 관련이 462건, 6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이 86건, 11.8%, 분쟁조정 관련이 81건, 11.1%를 차지함

공공데이터제공 관련한 상담·컨설팅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 판단이 369건, 7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방법이 36건, 7.8%, 공공데이터제공 후 문제가 31건, 6.7%, 공공데이터 신청 방법이 26건으로 5.6%를 차지함

상담·컨설팅 대상은 공공기관이 591건으로 전체 81.1%,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138건으로 18.9%에 해당함.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법 관련 전문성의 부족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에 대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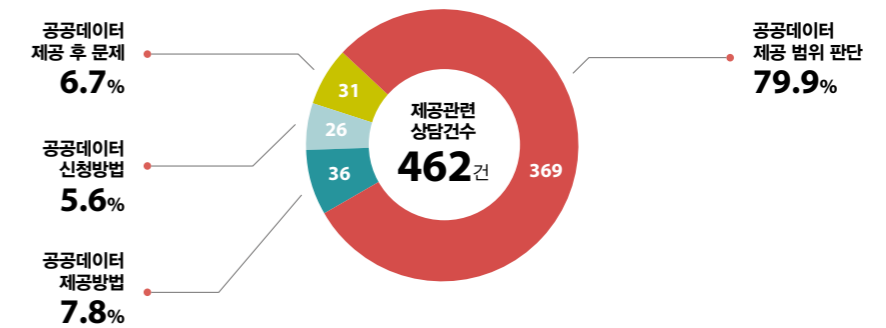
상담·컨설팅 데이터 내용별 현황

2014.01.01~201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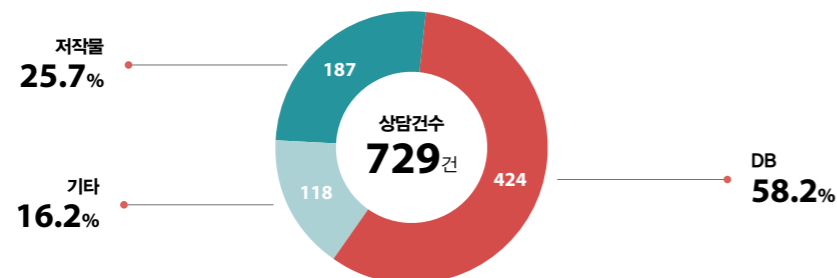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상담·컨설팅 현황

2014.01.01~201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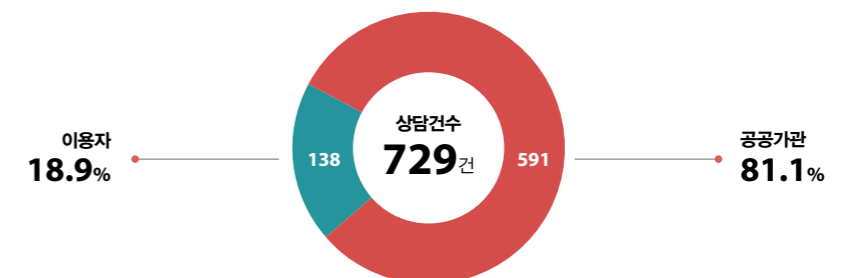
상담·컨설팅 데이터 유형별 현황

2014.01.01~2018.12.31



상담·컨설팅 대상별 현황

2014.01.01~2018.12.31



II 분쟁조정사례



1.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개인정보〉

1)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분쟁조정

(1) 소방청, 화재발생지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데이터 분석 및 기획보도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화재발생지 데이터(화재발생지 상세주소(세부지번, 아파트 동, 호수 포함), 화재 개요)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소방청)은 사건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거부함

②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현황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의 원인¹⁾,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에 대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한 내용을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연간 약 4만 건의 화재정보가 생성·관리됨

관리 데이터는 해당 화재건의 원인(실화, 방화), 연소 확대, 피해상황, 관계자 및 소방시설 현황 등 총 213종이며, 이 중 상세주소(건물명), 화재개요 등²⁾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가능함

- 현재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일일 화재현황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일일 화재현황정보 : 소방관서, 주소(동단위), 화재발생일시, 피해액(천원), 사망자수/부상자수
- 화재개요는 화재조사관이 특정 화재사고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으로, 화재일시·발화지점·최초 목격자 진술, 현장조사 시 특이점 등이 포함되며 목격자 이름, 나이, 전화번호, 발화대상 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소방기본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1) 발화원인,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등
2) 차량번호, 건축위험물대상, 화재조사서 작성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항목(데이터) 제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화재 사건에 대한 사실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관련 판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서울행정법원 2008.11.13.선고 2008구합31987판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입증을 요함(대법원 2004.5.28.선고 2001두3358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6.선고 2008구합 26466판결)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화재조사 관련 자료(화재증명원 등)는 관계인이 보험, 세금감면, 소송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재이력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
- 예컨대, 건물 매매 등 거래에 있어서 화재이력이 알려질 수 있으며 이는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나,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화재이력을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익이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 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보험 및 소송 등에서 악용될 우려를 주장하나 일방적인 우려의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 종합하면,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발생지 상세주소가 공개될 경우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다 실증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관련 판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대법원 2012.6.18.선고 2011두2361),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그 판단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두8050판결 등)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의 경우, 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화재발생지 관련 데이터 213종 중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소유자 성별 및 나이, 점유자 성별 및 나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소와 결합할 경우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화재개요 데이터의 경우, 목격자 등 관련자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터링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해당 데이터는 전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③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와 관련하여, 현재 피신청인이 제공 중인 주소 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건물명(예: 00아파트) 및 동 데이터(예: 101동)'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 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 주소의 경우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하며, 치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화재개요 데이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1,000~2,000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제공하고, 삭제 등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별 화재지를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 (제17조제1항 각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데이터 제공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이 사건 데이터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소정의 조치 후 제공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화재발생 상세주소 데이터의 경우, 기 제공 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건물명(예: 00아파트) 및 동 데이터(예: 101동)'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은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함
- 화재개요 데이터의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1,000~2,000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제공토록 함
- 상기 치환 및 삭제 등 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가공 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신청인은 데이터의 이용과정에서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별 화재지를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됨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 경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의사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명확히 확인할 것을 권고함

④ 조정결과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사건을 종결함

(2)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본정보 Open API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중고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별 기본정보(차명, 최초등록일, 취득가액, 제원관리번호 등 17개 항목)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국토교통부)은 자동차 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에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 등록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등록원부를 관리함(해당 정보 시스템 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 동 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자동차제원정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³⁾)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데이터 17개 항목은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음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종류(승용·승합·화물·특수)와 용도(비사업용·운수사업용·외교용)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함(자동차관리법 제16조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하며, 1~2자리의 숫자는 자동차의 종류, 3자리의 한글은 자동차의 용도를 표시함(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12허XXXX는 승용,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의미함(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참조)

나. 데이터의 제공 현황

A. 공공데이터 제공(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5-012사건(월별 자동차등록정보)에서 위원회는 자동차제원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또는 분리 조치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하였고,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청인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 일부 등의 정보를 제공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7-028사건에서 위원회는 자동차등록번호 1~3자리 및 차대번호 1~10자리 데이터(국내 생산차량 제외)를 제공하되, 국내에 소수 등록된 차량의 경우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도록 권고함. 데이터 제공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국내 500대 이하로 등록된 차량의 데이터는 제외함

B. 전산자료신청을 통한 제공(자동차관리법)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함

- 국토교통부 담당자(자동차운영보험과)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가입관리),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매매업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업무), 유료도로 운영회사(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채납금 통지업무) 등이 동 조항에 근거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데이터 내용별 현황

※ 2015-012사건 데이터 제공 범위 중 발췌

구분	자동차 정보	공개가능 여부	샘플데이터
1	자동차등록번호	부분가능	경기(XX)우(XXXX)
2	차종	가능	승용
3	용도	가능	자가용
4	차명	가능	아반떼엑스디
5	형식 및 연식	가능	XD-15DL-A1, 2005년
6	차대번호(17자리)	부분가능	KMHDG41DBCUCXXXXXX
7	원동기형식	가능	G4FK
8	사용본거지	부분가능	서울시 강남구
9	소유자 주소	부분가능	서울시 강남구
10	제원관리번호	가능	A0810008500141211
11	길이	가능	4920
12	너비	가능	1860
13	높이	가능	1470
14	총중량	가능	2500
15	배기량	가능	1495
16	정격 출력	가능	145
17	승차정원	가능	5
18	최대적재량	가능	1000
19	기통수	가능	4
20	연료의 종류	가능	휘발유

3) 제작자명, 차명, 형식, 차대차체 형상, 승차정원, 종별, 유형, 구분, 용도 등 28개 항목

C.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자동차관리법)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음
- 본인차량 및 타인차량에 대한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 조회가 가능함(2015.10~)
 - ※ 수수료 부과: 본인차량(452원), 타인동의차량(452원), 타인 미동의 차량(226원)
-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⁴⁾와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⁵⁾로 구분되어 제공
- 단,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이용자가 특정한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자동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한적 제공 방식을 취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조2제1항 및 제2항)

다.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 정의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라.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관련 판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6.18.선고 2011두2361),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그 판단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두8050판결 등)

-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개인정보정책과-231(2017.8.30.))
-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정보에 대해 다섯 차례의 분쟁조정(2014-014 사건, 2015-012사건, 2016-005사건, 2017-007사건, 2017-028사건)을 진행하였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㉔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피신청인은 2018년에 진행하는 자동차종합정보 개방체계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4)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정보, 자동차세 체납정보, 보험가입정보, 정비이력정보 등(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5)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등(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

나.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 (제17조제1항각호)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 위원회의 사실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 자체의 개인정보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 법령 및 관행을 고려하면, 자동차 등록번호 데이터의 개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 개방체계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신청인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주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4 조정결과

조정안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3)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및 제원 데이터

1 개요

신청인은 데이터분석 및 통계서비스를 위해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⁶⁾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국토교통부)은 데이터 가공의무 부존재 및 과거 데이터 제공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 신청인은 당초 소유자 주소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공범위 확대(현행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를 신청하였으나, 당사자 협의를 통해 철회함

2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등록원부를 관리함

- 동 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자동차제원정보⁷⁾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데이터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음

나. 데이터의 제공 현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2015-012사건(월별 자동차등록정보)에서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또는 분리조치 하여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함

- 피신청인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신청인과 협의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정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13호 (2014.3.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 Ver 1.0(미래창조과학부·NIA발행)」을 참고하여, 신청 데이터 중 개인정보성이 있는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 후 제공기로 함

6) 신규 제공: 원동기최고출력값, 연료소비율, 차량중량, 차량총중량 (제공범위 확대) 취득금액(현행 100만원 단위 → 10만원 단위)

7) 자동차제원정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 제작자명, 차명, 형식, 차대차체형상, 승차정원, 종별, 유형, 구분, 용도 등 28개 항목

- 예컨대, 차량등록번호는 숫자 부분을 마스킹하여 “경기XX우XXXX”, 차대번호는 뒷 6자리의 고유번호를 마스킹하여 “KMHDG41DBCUXXXXXX”의 형태로 제공하고, 소유자 등록번호는 연령을 범주화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30대 남자”의 형태로 제공함
- 이 사건 데이터 중 “취득금액”은 실제 취득금액의 백만원 단위까지, “소유자 주소”는 시/군/구 단위까지 제공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함

다.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라.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자동차 등록 및 제원정보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8) 2014년-014사건(자동차정비비력 데이터베이스), 2015-012사건(자동차 등록 및 제원정보), 2016-005사건(자동차 등록 및 제원정보), 2017-007사건(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일부), 2017-028사건(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일부), 2018-014사건(자동차 기본정보 Open API)

관련 판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6.18.선고 2011두2361),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그 판단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두8050판결 등)

-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정보에 대해 여섯 차례의 분쟁조정⁸⁾을 진행하였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한편,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관련 판례

정보공개법에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한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관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 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해당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2.11.선고2009두6001판결)”고 판시한 바 있음

- 위원회는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이 용이한 경우⁹⁾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¹⁰⁾ 등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에 공공기관의 비용 또는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제공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한편,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가공(데이터 추출 및 오류 정제 등)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가공을 위해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제공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대검찰청 범죄분석데이터 사건(2018-020))

③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데이터 제공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며, 해당 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제17조제1항각호)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정보 또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SW개발 등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조정결과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4) 대검찰청, 범죄분석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위해 범죄분석데이터¹¹⁾를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대검찰청)은 이 사건 데이터는 기 공표된 통계 외에는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으며, 현 시점 기준으로 자료 산출 시 공표된 통계와 불일치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쟁점

가.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현황¹²⁾

범죄분석통계는 국가승인 보고통계(승인번호 제135001호)로서 각종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정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개발, 1963년 「범죄분석」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간되었고, 1994년부터는 연 단위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음

범죄분석통계의 자료는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에 입력된 범죄발생 사건, 검거, 피의자 관련 정보를 집계하여 구성되며, 검찰청 내의 통계시스템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추출,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집계함(대검찰청 예규 제772호 「범죄통계 개선」을 따름)

범죄자들에 대한 통계정보는 피의자통계원표를 통해 작성하며, 피신청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 정보는 1세별로 집계 가능함

- 다만, 통계자료는 1세, 5세 또는 10세 단위로 가공하여 공표

※ (예) 범죄자 범행 시 연령(1999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 (예) 범죄자 연령(2014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70세, 71세 이상

- 전산입력이 완료된 각 범죄통계원표(전산자료 포함)는 사건처분연도의 다음해 말까지 보존 후 폐기(대검예규 제772호 「범죄통계개선」, III. 범죄통계원표의 전산입력, 제출 및 보존요령 참조)

- 다만, 2000년도부터의 통계원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함

9) 행정자치부 봉사참여서비스 Open API의 검색서비스 결과값에 주소코드가 포함되도록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안(분쟁조정 2016-015사건)에서, 피신청인에게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정·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이나, 기술적 검토 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한 점 및 해당 Open API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제공토록 사전조정

10)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2015-012, 2017-028), 소방청 화재발생지 상세주소데이터(2018-012)의 경우 데이터의 가공 및 치환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를 제공토록 조정

11)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별 총 범죄건수/살인범죄 건수(범행 시 연령 기준)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년 기준

12) 통계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17.12. 참조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범죄분석데이터는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요청한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별 범죄건수(총범죄/살인) 데이터¹³⁾는 피신청인이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별도의 산출과정 필요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범죄에 관한 통계자료를 생성·관리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음

- 피신청인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이라 한다)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절차전자화법제6조제3항),
- 형사사법정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¹⁴⁾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함(형사절차전자화법 제2조제3호)
- 범죄분석데이터는 피신청인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한 통계원표를 통해 작성되므로 형사사법정보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청 데이터가 형사절차 전자화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형사사법정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형사사법업무의 범위를 해석하고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광의의 개념으로서 통계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음¹⁵⁾
- 다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이용제한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이 사건 데이터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목적 및 취지, 정보공개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이 필요함
- 형사절차전자화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에 있으며(형사절차전자화법 제1조),
- 동법이 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조하면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도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제6조)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¹⁶⁾
- 또한, 동 보고서는 동법이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제15조제2항)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가 일반 행정정보에 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¹⁷⁾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목적 외 정보수집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 사건 데이터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 없는 정보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15)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의로 보면 개별적인 형사사건 처리를 의미하고, 광의로 보면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정책 수립, 통계작성·관리, 범죄정보 분석, 국정감사 자료제공 등 수사행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절차전자화법은 서류에서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수반된 업무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에 “관련된 업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가 이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기범,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6권제1호(통권 제61호), 한국법학회, 2016, 125쪽.

16)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대하여 ①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안 제3조제1항에서 ②시스템의 유효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 ③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의무를 안 제4조에서 ④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의무를 안 제5조에서 각각 부과하고 있음. 이들 의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유도하고 각 계층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호환성 및 연계성을 보장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검토보고”, 2009.9. 17-18쪽

17)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정부법」의 경우보다 벌칙을 가중한 것은 형사사법정보가 일반 행정정보에 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검토보고”, 2009.9. 22쪽

13)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년 기준

14)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형사절차전자화법 제2조제1호)

이 사건 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해석례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으로(대법원 2004두 12629),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지 못한 행정예규 등은 근거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3두 8395)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업무처리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거나(법제처 법령해석 11-0350),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법제처 법령해석 11-0014, 11-0350)*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한편,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 위원회는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이 용이한 경우¹⁸⁾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¹⁹⁾ 등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에 공공기관의 비용 또는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제공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에서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1975, 1980, 1985, 1990, 1995년에 대한 데이터는 생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2000, 2005, 2010년에 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데이터 가공의 용이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데이터 추출의 기술적 난이도 외에도 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노력 및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 행정자치부 봉사참여서비스 Open API의 검색서비스 결과값에 주소코드가 포함되도록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분쟁조정 2016-015사건)에서, 피신청인에게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정·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이나, 기술적 검토 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한 점 및 해당 Open API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제공토록 조정(사전조정)

19)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2015-012, 2017-028), 소방청 화재발생지 상세주소데이터(2018-012)의 경우 데이터의 가공 및 치환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를 제공토록 조정

㉔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1세~60세까지 1세 단위로 집계된 범죄자수 데이터(총 범죄 및 살인)를 제공한다.

- 단, 위 데이터는 2014년, 2015년, 2016년 데이터로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제17조제1항각호)

위원회 검토 결과, 이 사건 데이터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제공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 중 1975, 1980, 1985, 1990, 1995년 데이터의 경우, 관련 통계자료는 물론 통계원표조차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 2000, 2005, 2010년 데이터의 경우, 통계원표는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가공(데이터 추출 및 오류 정제 등)과정이 필요한 점, 해당 가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공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움(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 다만, 2014, 2015, 2016년 데이터(2017년12월 공표)의 경우, 피신청인의 통계업무개선으로 1세별로 집계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안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

㉕ 조정결과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5)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지급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연구 목적으로 복지급여지급데이터²⁰⁾를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보건복지부)은 해당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조정 전 합의 권고 사항

가. 합의 권고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다음과 같은 데이터²¹⁾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 목적 내에서 이용하되, 개인을 식별하거나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나. 합의 권고 이유

이 사건 데이터는 지역별 복지급여 지급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검토 결과 수급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5세 단위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동일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다수 존재하는 바, 더 이상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가 될 수 있음

※ 복지급여 지급구분의 세부사항 중 수급자의 수가 적어 상기 데이터 제공 시 수급자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청인은 데이터 이용 시 개인을 식별하거나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함

③ 조정결과

조정 전 합의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

20) 2017년 경기도 내 각종 복지급여 지급내역(번호, 지급구분(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지역(행정동), 생년, 성별, 지급월, 지급액, 비고)

21) 지급구분(생계/의료/주거), 지역(읍/면/동), 수급자 생년(5년 단위), 수급자 성별, 지급월, 지급액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

(6) 고용노동부,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기업의 환경정보, 고용, 인재 등 비재무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서비스하는 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책임(CSR)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별 '노동조합현황데이터'²²⁾를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고용노동부)은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은 통계법 제31조 위반이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토대로 노동단체카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합하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통계를 산출하고(통계법 제18조 승인통계) 매년 하반기 통계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지역별 노동조합명부를 작성하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이라는 발간물을 매년 제작하고 관련 기관²³⁾에 배부하고 있음.

- 노동조합명부에는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년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 등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비공개대상정보이며, 정보공개법상 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또는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함을 이유로 전체 비공개 중임

※ 단, 상기 서술과 같이 책자로 제작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에 배부함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데이터 관리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자료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22) 기업명/사업장명/노동조합명/조합원 수(남성/여성/전체)/전체 근로자 수/사무소소재지/설립일/데이터 기준 일자

23)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에 실물 책자로 배부하며, 외부에는 제공하지 않음

- 이 사건 데이터는 노동조합 정보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 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 중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년월, 전화번호, 조합원수(전체/여성), 상급단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특히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받거나 의견수렴을 한 사실은 없으나,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림

i) 아직 우리사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사용자가 많아 노동조합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용자측으로부터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ii) '11.7.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어 노노갈등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 설립일, 상급단체 등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iii) 대다수 노동조합은 자신의 존재 또는 정보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는 적절치 않음

관련 조정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위원회 2016-012 사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권고함

- i) 해당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장기간 게시되어 왔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민원이 없었다는 점
- ii) 2015년부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하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는 사건당시에도 해당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여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iii) 이미 경기도·경상남도·전라남도 등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전체 또는 일부 개방하고 있다는 점(공공데이터포털 또는 정보공개포털) 등을 고려하면, 해당 데이터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㉔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조정결정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제17조제1항각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법상 통계자료이므로 통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법률상 정해진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한 행정자료(통계법 제3조제7호)로 보아야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체로서 제공대상임
- 관련 조항을 검토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특정 법인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신청인은 i) 아직 우리사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사용자가 많아 노동조합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용자측으로부터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ii) '11.7.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어 노노갈등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 설립일, 상급단체 등은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iii) 대다수 노동조합은 자신의 존재 또는 정보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적절함을 주장하나,

- 이 사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장기간 게시되어 왔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민원이 없었다는 점,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데이터 개방사이트(localdata.go.kr)”를 통해 노동조합의 데이터(조합명, 주소, 인허가일자, 폐업일자, 소속단체명, 조합원 수 등)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18.7.2기준 9,957개소, 해산된 노동조합 포함)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는 항목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기업의 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 비재무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서비스 하는 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책임(CSR)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산업재해현황²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고용노동부)은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자료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통계법 제31조제2항)하자, 데이터 전체 제공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피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8호(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산업재해현황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통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명을 비식별처리한 채로 재해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재해율, 동종업종평균 재해율 등 총 7개 항목 데이터가 제공가능하며, 이미 신청인에게 제공함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산업재해 현황 정보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됨(제9조제1항제7호각목)

관련 판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판결),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판결)

라. 통계법상 제공제한 규정 해당 여부

통계법은 통계자료²⁵⁾ 및 행정자료²⁶⁾ 라는 개념을 두고,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및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통계법 제31조)

- 해당 규정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1조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제31조제2항)

-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²⁷⁾ 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

25)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함(제3조제4호)

26)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함(제3조제7호)

27) i)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ii)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상호·업종·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제31조제2항각호)

24) 기업명/사업장명/재해율/재해인원/재해정도(사망/부상)/처리결과/신고누락여부/산재다발여부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법률상 정해진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한 행정 자료(통계법 제3조제7호)로 보아야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체로서 제공대상으로 판단됨

③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 중 피신청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며,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는 제외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출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 (제17조제1항각호)

관련 조항을 검토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특정 법인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산업재해현황데이터 제공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볼 수 있을 것임

- 피신청인은 산업재해에는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재해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기업이미지의 훼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시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재해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피신청인은 대기업의 경우 산업재해현황의 공개가 해외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참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발주업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에게 산업재해현황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 제공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침해로 보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에서 산업재해발생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도급 재계약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의 기업도 하청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현황, 예방책 및 이행현황 등을 공개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에 기여할 사회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공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음

한편, 피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의 명단을 이미 공표하고 있는바,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의 제공은 해당 공표제도의 사문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데이터 중 '재해율'은 그동안 산업재해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현재 각종 평가지표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므로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공표의 경우 관련 법령에 공표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표 사업장에는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업장감독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공공데이터제공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제3자 권리 포함정보를 제외하면 제공의무가 인정되며 제공대상 데이터에 속한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제도의 사문화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산업재해 은폐 등의 문제가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는 항목을 제공하되,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를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제공일자, 제공기관 등 출처와 함께 산업재해현황에는 사업주의 과실 없는 재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오해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훼손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④ 조정결과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의 소명없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8)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현황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기업의 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 비재무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서비스 하는 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책임(CSR)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별 '장애인 고용현황 데이터'²⁸⁾를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고용노동부)은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자료에 해당하므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유(통계법 제31조제2항)로 제공을 거부함

②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제28조제1항),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29조제1항)

– 사업주(민간)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연 2회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보고하며, 이를 접수한 후 오류정정절차 등을 거친 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통계로 작성됨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법 등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제17조제1항각호)

관련 조항을 검토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특정 법인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명, 장애인고용인원수'의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로서 의무고용을 준수여부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데이터 제공 시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되어야 함

③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제17조제1항각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법상 통계자료이므로 통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법률상 정해진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한 행정자료(통계법 제3조제7호)로 보아야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제로서 제공대상임

관련 조항을 검토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특정 법인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명예훼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숨김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을

28) 기업명/사업장명/장애인고용인원수 및 비율/의무고용을 준수 여부

정당한 이익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만약 기업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 판단됨

또한, 피신청인은 장애인고용법에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데이터는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장애인고용법에 의한 공표범위와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공공데이터의 제공가능 범위는 공공데이터법상 제공기준(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데이터가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른 공표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제공거부의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는 항목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④ 조정결과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의 소명 없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9)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현황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기업의 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 비재무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서비스 하는 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책임(CSR)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별 '육아휴직현황데이터'²⁹⁾ 및 '육아휴직급여데이터'³⁰⁾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고용노동부)은 이 사건 데이터 중 '육아휴직현황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데이터'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DB화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 추출이 가능하지 않으며, 추출이 가능하더라도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려는 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며, 기업의 육아휴직 이용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 데이터 중 기업의 육아휴직제도 이용현황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피신청인은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지급현황 신청데이터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DB화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신청데이터의 형태로는 관리되지 않음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0호 서식) 및 육아휴직 확인서(동 규칙 별지 102호 서식)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이를 통해 수집된 것임

-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데이터 역시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는 관리되고 있지 않음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등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9) 기업명/사업장명/육아휴직제도 존재여부/육아휴직제도 사용률/복귀율/사용기간(여성/남성/전체 및 정규직/기간제 근로자)

30) 기업명/사업장명/육아휴직급여신청여부/지급기간(여성/남성/전체 및 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바와 같은 기업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 다만,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비즈니스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공공데이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 데이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공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 협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가 필요함

③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만약 피신청인이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에 과도한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한다.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공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제17조제1항각호)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및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 중 '육아휴직현황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육아휴직급여데이터'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DB화되어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데이터'의 신청항목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출이 가능하다면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이라 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육아휴직급여데이터'는 DB화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 추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데이터 추출로 인해 업무에 과도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 만약 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를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나,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용 부과 시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④ 조정결과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의 소명 없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10) 금융감독원, 공매도잔고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공매도 잔고 데이터³¹⁾를 가공하여 개인 및 기업에 더 쉽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는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금융감독원)은 신청데이터 제공시 매도자의 투자전략이 노출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A. 공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할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차입공매도³²⁾의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가능함

31) 종목명, 종목번호, 기준일, 참가자별 공매도 잔고 수량(참가자 인적 사항은 제외)

3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서, 결제에 사용할 주식을 미리 빌려 온 후 매도주문을 하는 거래를 의미(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제도 안내", 2017.5. 1쪽)

B. 보고

차입공매도한 자(이하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³³⁾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제1항)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위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³⁴⁾의 접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C. 공시

공매도 잔고를 다량 보유하는 경우³⁵⁾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등³⁶⁾을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80조의3제1항)

- 매도자가 제출한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에서 한국거래소로 자동 전송되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가공하여 공매도 포털 홈페이지(short.krx.co.kr)에 게시함³⁷⁾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관리하며,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방식으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관리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 (제17조제1항각호)

33)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0.01%) 이상인 경우(순보유잔고 평가액 1억원 미만 제외),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4항각호)

34) i)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ii) 매도자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 iii)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

35)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0.5%) 이상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3제2항)

36) i)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ii) 매도자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iii)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최초의무발생일)(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의2)

37) 종목별/업종별 공매도 잔고 현황,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현황,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50 종목 등을 Excel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저작권을 근거로 영리적 이용을 금하고 있음

관련 조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됨(제9조제1항제7호각목)

관련 판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10.23.선고 2007두1798판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3101판결)

다만, 신청인은 매도자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데이터는 불특정 매도자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몇 주 공매도 하였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며 그 자체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정내용**가. 조정결정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른 공시범위인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데이터는 제공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한 내부검토를 통해 제공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제17조제1항각호)

피신청인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이미 공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데이터는 해당 규정에 따른 공시범위를 넘어서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공시가 의무화된 데이터의 범위와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가능범위는 공공데이터법상 제공기준(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데이터가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공시범위를 넘어서는 점을 제공거부의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순보유잔고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은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 중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는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시범위를 넘어서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순보유잔고의 공시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것은 동 공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뿐임에도(자본시장법 제180조의3제2항) 금융투자업 규정의 순보유잔고 공시에 관한 규정(동 고시 제6-31조의2)은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으로 순보유잔고가 시행령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로 제한하고 있어, 동 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매도자의 공시의무(자본시장법 제108조의3제1항)를 관련 법령상 충분한 근거 없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제공될 경우 기존 공시데이터와 결합하여 매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는 현행법상 공시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공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공데이터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조항을 검토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매도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특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피신청인 및 관련 기관의 제출자료 또는 진술만으로는 해당 데이터 제공 시 특정 매도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이 사건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이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중복·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서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6.]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제공범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다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 대상인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데이터는 제공에 필요한 소요 기간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개방 시기를 정하도록 함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법

제35조(비용부담)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해당 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④ 조정결과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특정 투자자의 거래정보 노출, 시장참가자들에 혼란 야기,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인한 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심대한 차질 발생을 주장하며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11) 충북 보은군, 토석채취허가현황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영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현황 데이터를³⁸⁾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충북 보은군)은 이 사건 데이터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조정내용(조정 전 합의권고)

가. 합의 권고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합의 권고 이유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외함(제17조제1항각호)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공공데이터법의 제공기준에 따라 제공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거부결정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공을 권고함

③ 조정결과

조정 전 합의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

38) 수허가자 상호, 연락처, 허가지주소(지번), 토석채취용도(쇄골재용/토목용 등), 허가면적, 허가수량, 허가시작일자, 허가종료일자

〈기타〉

(12) 국립춘천박물관, 문화유물 3D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실감형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물 3D데이터³⁹⁾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국립춘천박물관)은 신청 데이터는 준비 중인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이므로 해당 보고서 발간 전에는 제공이 불가하다며 제공거부함

②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이 사건 데이터는 문화유물에 대한 3D데이터로, 해당 유물의 제작기법 및 조성 배경을 연구한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피신청인은 국가에서 설립·운영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피신청인이 소장하는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할 때에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에 따름

- 동 규칙은 복제신청 및 승인절차(제3조), 복제요금의 납부 및 감면(제5조), 소정의 준수사항(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칙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유물로서 박물관 소장품을 복제할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에 의하면 박물관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복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름(제6조)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유물을 3D방식으로 스캔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특히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함

- 이 사건 데이터는 유물을 있는 그대로 스캔한 3D데이터로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만으로는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10.11.선고 2010두18758판결)
- 정보 비공개함을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함(대법원 2012.10.11.선고 2010두18758판결, 대법원 2016.5.24.선고 2014두38033판결)

한편, 피신청인은 보고서 발간 이후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야 하므로(제4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③ 조정내용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제공되는 데이터는 3차원 입체정보 및 색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CF 파일 등), 데이터의 용량은 약 50메가바이트로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관련 보고서 발간 전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발간 후에도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라 제공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 하였으나,

39) 석가여래좌상 2점, 약사여래좌상(보물 제1873호) 1점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데이터가 제공될 경우 피신청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야 하므로(제4조) 피신청인의 제공거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제공범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되, 제공되는 데이터는 3차원 입체정보 및 색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ICF 파일 등), 데이터의 용량은 약 50메가바이트⁴⁰⁾로 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 데이터 제공기관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데이터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저작권법 제37조의2 참조)

4 조정결과

위와 같은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료함

관련 조정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7-030사건

신청인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해외 국민들로부터 받은 선물의 3D데이터를 신청하였으나, 사실조사결과 공예품, 조각 등 미술저작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스캔한 3D데이터는 미술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여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전조정함

40) 피신청인은 조정부 회의('18.5.3)에서 문화재 스캔데이터의 특성상 고용량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위품·복제품 유통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를 요청하였고, 이를 신청인이 양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함
41) 글의 제목
42) 시, 편지, 기행문 등 글의 장르

2) 제3자 권리 관련 분쟁조정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데이터

1 개요

신청인은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인물 관계망”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데이터를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한국고전번역원)은 이 사건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 관련 사업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함

2 쟁점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피신청인은 1986년부터 주요 고전문헌을 수집하여 교감·표점·색인·해제 등의 정리과정을 통해 번역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원전정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조)

- 그 중 한국문집총간 간행사업은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저작된 역대 한국인의 주요 문집을 수집, 정리, 표점, 영인하여 간행한 것으로 총 1,295종 500책으로 2012년 완간함

- 한국문집총간은 약 2억 3,720만자의 본문텍스트, 651,665건의 기사 메타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사⁴¹⁾별, 문체⁴²⁾별로 색인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작업임

-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작업은 전기류, 서발류, 기문류, 서간류 및 통합본의 순서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전기류에 해당하는 자료가 정리되어 서비스 중임

* 올해 서발류의 편목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정보추출 및 상호검토 후 DB구축 예정(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고전번역원 2018년 주요사업 설명자료 참조)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한국고전번역원법상 정해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DB로 구축되어 웹서비스되고 있는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관련 사업의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한국고전번역원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데이터는 수시로 수정·보완되고 있는 불완전한 데이터 이므로 제공이 불가하며, 관련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2023년경에는 공공데이터로서 제공할 예정임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현재 데이터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하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은 일자 및 출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 위원회의 사실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관련 사업참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부 사유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함

- 다만, 피신청인이 사업 참여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받지 않았고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하되 2차적 저작물은 작성할 수 없음

-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정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데이터를 제공받은 일자, 출처와 함께 해당 데이터가 피신청인의 웹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함

④ 조정결과

위와 같은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

(2) 국토교통부, 발간물(도시개발관련 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원문 파일

① 개요

신청인은 출판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도시개발관련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의 전자파일을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국토교통부)은 이 사례집이 공익적 목적으로 발간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출판한다면 해당 사례집 발간 목적과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쟁점

가.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도시개발관련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도시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개발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원 감소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발간하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배포해오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게시하는 등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제17조제1항각호)

③ 조정내용(조정 전 합의 권고)

가. 합의권고 사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 동 데이터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동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합의권고 이유

이 사건 데이터는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법상 제공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 동 데이터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동 데이터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함

④ 조정결과

위와 같은 합의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논문색인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검색서비스를 위한 DB구축을 위해 NDSL⁴³⁾ 논문 색인데이터를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신청데이터에 제3자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쟁점

가.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데이터 수집하여 관리, 유통,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나.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므로(제17조제1항)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조정결과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NDSL 논문 중 피신청인이 학회와의 협약을 통해 직접 DB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학술논문 메타데이터의 경우 제공이 가능함

다만, 해외 업체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한 메타데이터의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이 어려움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제공거부경위를 양해하고, 양 당사자가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함

(4) 독립기념관, 국가수호사적지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독립운동 LOD 구현을 위해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사적지 데이터⁴⁴⁾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독립기념관)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쟁점

가.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독립기념관법 제1조 및 제6조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 및 웹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나.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므로(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신청 데이터는 2007~2009년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해당 데이터는 지역별 전문가가 집필한 것으로 피신청인 제출 계약서(용역계약서 등) 검토 결과,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독립기념관이 양수하였거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 조정결과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합의하에, 신청데이터를 갈음하여 “국가수호사적지명 및 관리번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함

43)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플랫폼으로, 논문·특허·보고서·동향·저널/프로시딩·연구자·연구기관 등 약 1억건 이상의 콘텐츠에 대한 검색 및 콘텐츠 유형별 전문검색 서비스를 제공

44) 사적지 현황(사적지분류, 제목, 운동계열, 지역) 및 사적지별 정보(기본정보, 관련정보, 지역정보)

3) 기타 분쟁 조정

(1) 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앱서비스를 위해 화물열차 데이터를 제공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한국철도공사)은 신청 데이터에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거부함

② 조정결과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일부(운행구간, 시간표)를 PDF파일 형태로 신청인에게 부분제공하였고, 내부회의를 통해 미제공 데이터 중 고객·영업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함

다만, 현재 Open API 형태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요청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은 어려우며, 향후 정보화부서의 계획('19년~'20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임

신청인이 위와 같은 제공거부경위 및 향후 제공계획을 양해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종결함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단지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정보⁴⁵⁾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국토교통부) 데이터 신뢰성 및 데이터 미보유에 따른 가공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함

② 조정결과

사실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사건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3) 경기도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은 앱 서비스를 목적으로 경기도 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18년 4월 기준 현행화) 데이터⁴⁶⁾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경기도 교육청)이 2018.1.1.자 데이터를 제공하자 최신 버전의 데이터를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② 조정결과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서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각 교육지원청의 자료추출 및 검토·수정, 경기도 교육청의 검토 및 보완 등 소정의 절차와 그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청 시점에 맞추어 별도 데이터 생산이 어려움

- 단,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표 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였고, 최신 데이터를 7월말까지 공표할 계획임
- 신청인이 위와 같은 경위를 양해하고, 신청 데이터를 갈음하여 7월에 수집·공표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함

45) 명칭, 행정동주소(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법정동주소, 도로명주소, 그 외 행정동주소 또는 법정동 주소를 코드화한 PNU 코드, 단지분류, 분양형태, 관리방식, 난방방식, 복도유형,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동수, 세대수, 면적별 세대 현황(60㎡/60㎡~85㎡/135㎡초과, 전용면적기준), 시공사, 시행사,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수전용량, 세대전기계약방식, 전기안전관리자법정선임여부, 화재수신반방식, 급수방식, 승강기관리형태, 승강기 종류, 승강기 대수, 주차대수(지상, 지하), CCTV대수, 부대 복리시설

46) 학원료/학원종류/학원주소/설립자/전화번호/교습계열/교습과정/교과과목/정원/교습기간/총교습기간/총교습비/교습비/모의고사비/재료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피복비/기타경비합계/총교습비/강사수

2. 분쟁조정 취하 사건

(1)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주차장 평면도 데이터 등

① 개요

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의견제시를 위한 자료조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주차장 평면도 및 택지비 감정평가서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이 해당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거부함

② 결과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의료기관 데이터

① 개요

신청인이 병원 정보서비스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금연치료 의료기관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데이터는 정보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신청반려함

② 결과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함

III 공공데이터, 분쟁위에 물어보세요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Q1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데이터 중 전자화된 것은 모두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Q2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라면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이거나 제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가 포함되고 권리자로부터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6.>

Q3

공공데이터에
대외 공개가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공가능한 정보와 불가능한 정보가 함께 존재하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제공불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Q4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판단 하나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집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해당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위탁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귀속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등 공공데이터(저작물) 개방에 관한 전문기관에 문의하신 후 제공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생략)
3.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전문개정 2013. 8. 6.]

Q5

공공기관의 발간물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발간물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공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발간물의 내용상 분리하는 것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일체로서 제공거부할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에게 제공의무가 있나요?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법률이므로, 외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경우 기관에게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책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Q7

우리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특정한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신청 받았습니. 신청인의 요구대로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요?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가공비용을 부담하는 등 공공기관에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조정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6-015사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정·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이나, 기술적 검토 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의 수정이 용이한 점 및 해당 Open API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제공토록 조정(사전조정)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5-012, 2017-028, 2018-012사건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가공 및 치환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를 제공토록 조정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8-020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가공(데이터 추출 및 오류 정제 등)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가공을 위해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제공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Q8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되, 이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17조 제공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수로 제공 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권리자에게 해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 허락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여, 권리자가 반대한다면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을 참고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9

공공기관 발간물에 대해 이미 제3자에게 출판하도록 허락해주었는데, 이후 다른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나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로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제공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저작권법상 출판권 등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다른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이용허락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2.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Q1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Q2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용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과 함께 이용요건을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사유가 되는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임의로 상업적 이용금지와 같은 조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Q3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공데이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에는 신청목적은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신청서에 기입된 신청 목적을 고려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해당 신청목적에 맞도록 데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법하게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라 하더라도 추후 법 제28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공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4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악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악용이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용'의 범위를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5

공공데이터 이용 시 출처를 표시 해야 하나요?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시 제시한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한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2)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공공기관의 조건 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법상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 조정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8-017사건

출판 및 전자책 제작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법령질의회신사례집 파일을 제공신청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신청인에게는 데이터 이용 시 해당 데이터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동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사전조정함

참고

공공저작물 출처 표시 의무

※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고문(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중 발췌

1. 출처 표시 의무

-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 관련

Q1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이 거부되었거나 데이터 제공 중단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또는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1조(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분쟁의 조정)

- ⑦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Q2

공공기관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당 기관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저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주세요. 전화(02-6191-2064) 혹은 이메일(odmc@nia.or.kr)로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3

'분쟁조정'이라고 하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가 많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제공거부 통지서나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 해주시면 원활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Q4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Q5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성립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정안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는 법적 효력 없이 모두 종료되며,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Q1

이용자가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제3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기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는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중단결정을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법 소관 부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6조(면책)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Q2

공공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므로 공공기관 업무를 위하여 이미 생성 또는 취득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 비용이 소요된다면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의 산정에 관해서는 공공데이터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8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5조(비용부담)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Q3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데이터에 다른 공공기관이 수집·입력한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공대상에 해당하나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정보만이 제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다른 기관이 수집·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공거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3자 권리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데이터를 수집·입력한 기관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조정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4-003사건

네비게이션 제공 서비스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전국도로이정표 정보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해당 데이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입력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주무부처의 시스템에 통합 관리되고 있으므로 해당 주무부처가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일괄 제공하도록 권고함(조정성립)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2017-018사건

자동차정비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및 통계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자동차정비업체 등록정보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해당 데이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입력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를 일괄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함(조정불성립).

Q4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은 다른 제도인가요?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이지만 정보공개 대상과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은 중복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6.>

2018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

인 쇄 일 2019년 4월

발 행 일 2019년 4월

발 행 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기획편집 사무국 이해정(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
유지혜(법학박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

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3층

전 화 02-6191-2064

디 자 인 디자인메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에서 본서의 전자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